

부록

1_해외사례 검토

1) 일본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³⁰⁾

(1) 위상

- 사회자본중점정비계획법(2003)을 근거로 한 사회자본정비사업 추진 계획
 - 사회자본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국토형성계획(2015.8)을 실현
 - 계획기간: 2015~2020(1차: 2003~2007, 2차: 2008~2012, 3차: 2012~2016)

(2) 대상

- 도로, 교통안전시설, 철도, 공항, 항로표식, 공원·녹지, 하수도, 하천, 사방사업, 급경사지 및 해안선 사업 등

(3) 수립배경 및 과제

- 인프라의 노후화 가속
- 지진, 기상재해로 국토의 취약화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피폐화
- 국제 경쟁의 심화

(4) 기본방침

- 사회자본의 보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프라를 관리
- 기존 시설을 집약·재편 등 전략적으로 관리

³⁰⁾ 国土交通省, 2015, 第4次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 및 차미숙, 2016.11, “인프라의 노후화와 현명한 이용”, 국토정책 Brief, No.548, 국토연구원, p.6 참조 정리

- 유지관리주기를 구축하여 노후인프라 안전성 확보
- 집약화·적정 규모화로 중장기적으로 총비용을 감축하고 평준화
- 인프라 유지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기존 시설의 효과적 활용
 - 기존 시설 기능을 극대화, 강화·고도화, 복합화
- 사회자본의 목적과 역할별 철저한 선택과 집중
 - 안전·안심인프라: 하드·소프트웨어적인 대응을 총동원하고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에 중점
 - 생활인프라: 지역생활서비스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중점
 - 성장인프라: 국제 전략에 의한 경쟁력과 민간 사업자 등과의 제휴를 강화하여 생산 확대의 효과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

(5) 중점목표와 추진전략

- 4대 중점목표와 13대 정책패키지, 성과평가를 위한 정책패키지별 수치목표(KPI)를 설정
 - 정책패키지별로 현황과 과제, 중장기 비전, 계획기간의 중점시책, KPI를 체계화
- 사회자본의 전략적 유지·관리 및 재생
 - 안전·안심 관리순환주기를 구축하고, 총비용 감축과 평준화를 동시 추구
 - 관리기술을 증진하고 정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재해특성과 지역의 취약성을 반영한 재해리스크 저감
 - 대규모 지진·해일·분화에 대한 중점 대응
 - 빈번·대형화하는 기상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
 - 재해 발생 시 리스크 저감을 위한 위기관리대책 강화
 - 육·해·공 교통의 안전 확보

-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
 - 지역생활서비스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콤팩트 시티 형성
 -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이동공간의 확보
 - 양호한 환경 형성, 깨끗한 물 순환의 유지, 회복 지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형성이나 그린 인프라 대책 추진
 -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삭감 및 완화 방안과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적응 대책 추진
-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성장 지원기반을 강화
 -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지방권의 산업 관광 투자를 유발하는 도시·지역 만들기 추진
 - 일본의 뛰어난 인프라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

(6) 시사점

-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 법 제정과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의 노후화 대응과 효율적 이용의 체계화 필요

2) 일본사례: PRE 유효 활용 가이드라인³¹⁾

(1) 도입배경

-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재정악화, 공적부동산(PRE: Public Real Estate)의 노후화와 유지·정비 비용 증가
- 지방도시의 콤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공적부동산을 활용하여 부족한 민간 기능 도입을 유도할 필요

(2) 도입 목적

- 전체 PRE 정보를 일원화하고 정리하여 지역만들기에 PRE를 활용하도록 지원

³¹⁾ 国土交通省 都市局 都市計画課, 2014.4, まちづくりのための公的不動産(PRE) 有効活用 ガイドライン 참조 정리

-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PRE 정보를 일원화·정리하고, 마을 특성에 따라 공공 기능 재배치 계획을 작성
- 학교부지 등 공유지를 요양시설과 같은 부족한 민간시설로 정비하여 활용하는 등 미래를 대비해 첨단적으로 대응
-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마을 만들기에 PRE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사항 제시

[부록 표 1] PRE 활용 검토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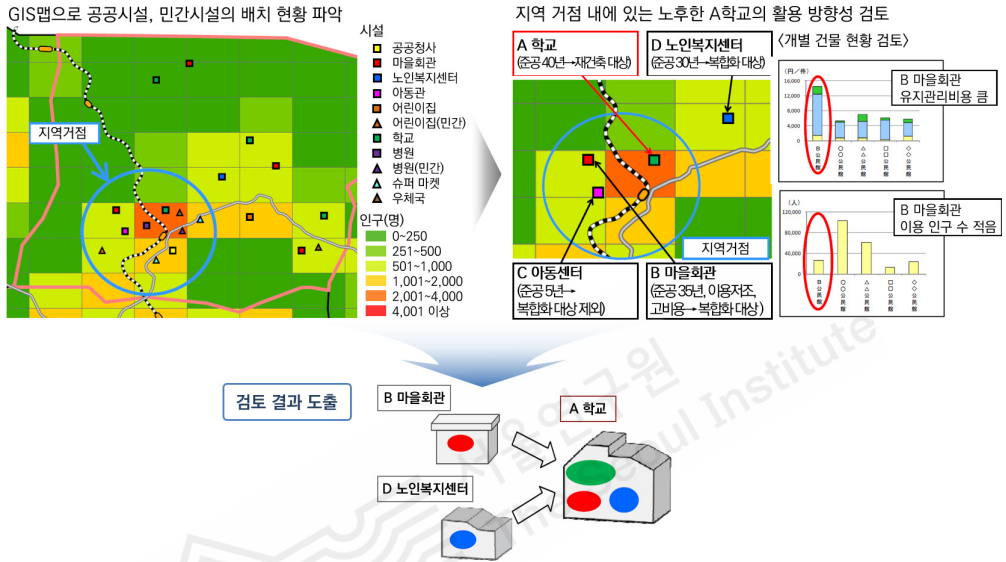
단계	주요 내용	세부내용
1단계	지역만들기 방향 정립	- 도시의 현황 파악: 사회·경제현황, 개발현황, 재정상황 - 마을만들기 방향 정립(마스터플랜 작성): 기본방향, 거주유도구역, 도시 기능유도구역 설정
2단계	PRE 정보 정리 및 일원화	- 총량 파악: 보유 현황, 유지·정비비용 추계 등 - 공간적 파악: PRE 배치상황 파악 및 정리(지역 실태 맵, PRE 입지 GIS맵 등) - 개별 파악: 개별 PRE의 이용 현황, 문제점 등 현황분석 및 과제 정리
3단계	PRE 재배치에 관한 기본방향 정리	- 현황과 과제 정리: 재정 및 PRE 보유 관련 - PRE에 관한 기본방향 정리: 지역만들기와 연계, 공공서비스 기본방향 등 - PRE 적정 보유량 목표 설정
4단계	PRE 활용 구체적인 방안 검토	- 지역의 각 거점에 요구되는 도시 기능 파악 및 필요한 시설 정리 - 도시 기능의 배치 현황과 필요시설의 과부족 조사 - 각 PRE 활용방안 검토: 유지, 보수·개축, 복합화, 관민병합, 폐지, 매각 등
5단계	개별 사업내용 검토	- 4단계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내용, 사업방식, 사업협력자 선정 검토 - 개별 사업계획의 작성·실시

(3) PRE 활용방안 검토와 결과 도출 사례

- GIS맵으로 공공시설, 민간시설의 배치 현황 파악
- 지역 거점 내에 있는 노후한 A학교의 활용 방향성 검토
- 검토 결과 도출
 - 학교 재건축 추진 시 주변의 노후한 마을회관, 노인복지센터와 복합화하고 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 정비
 - 학교를 복합 시설로 설치하여 다세대 교류와 지역 공생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형성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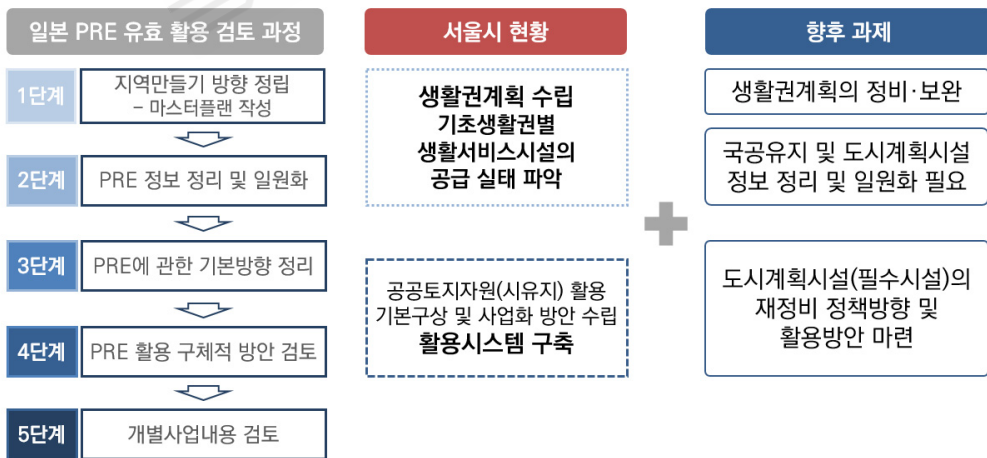
(4) 시사점

-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것은 “마스터플랜”과 “공공시설 정보의 일원화”가 선행
- 생활권계획의 정비·보완과 국공유지 및 도시계획시설 정보 정리 및 일원화 필요



[부록 그림 1] 일본 PRE 활용 검토 과정 예시

자료: 国土交通省 都市局 都市計画課, 2014.4, まちづくりのための公的不動産(PRE) 有効活用 ガイドライン, pp.35~36



[부록 그림 2] 일본 PRE 활용 과정과 서울시 현황 비교 및 향후 과제 도출

3) 일본 도시공원법 개정: 시설운영관리에서 민간부문 활용방안 마련³²⁾

(1) 공원 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2017년) 주요내용

-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 신설: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공환원형의 수익시설 설치관리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의 설치 관리 허가기간 연장: 10년→30년
-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점용 추가

(2)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

- 도입배경과 목적
 - 인구당 공원면적은 충분히 확보(10m²/명)했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유입력이 저하되었고 시설 개발과 정비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
 - 민간 활력을 이용한 도시공원 정비 방안을 신설하여 공원의 재생과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 도시공원 내 음식점, 매점 등의 시설(공모 대상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
 - 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원 정비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게는 도시공원법의 특례 적용
 - 특례 1. 설치관리허가기간 연장: 10년→20년
 - 특례 2. 건폐율 완화: 2%→12%
 - 특례 3. 점용물 확대: 편익시설에 자전거주차장 간판, 광고탑 추가

(3) 시사점

- 공원 일부에 민간이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익으로 공원시설 정비

³²⁾ 国土交通省 都市局 公園緑地・景観課, 2017, 都市公園法改正のポイント 참조해 정리

- 수익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질적 제고와 재정부담 감소
- 공원 일부에 수익성을 보장하는 개발 허가를 통해 장기 운영 위탁 방안 도입 필요



[부록 그림 3]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 개념

자료: 国土交通省 都市局 公園緑地 景観課, 2017, 都市公園法改正のポイント, p.7

4)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시설 가이드라인³³⁾

(1) CEQR 도입과 커뮤니티시설 및 서비스

- 개념
 - CEQR(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은 도시환경의 질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로 일종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
- 목적
 - 기존 시설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조사하고, 서비스·시설의 활용도를 정밀하게 정의하며,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³³⁾ NYC, 2016, 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Technical Manual 참조해 작성

- 대상시설
 - 시에서 공급하는 커뮤니티시설에 초점을 맞춤
공립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어린이집(아동보호센터), 의료시설, 소방서, 경찰서 등
- 내용
 - 커뮤니티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시설의 추가/변경 필요 여부 결정
- 평가방법
 - 커뮤니티 시설의 임계치를 설정하여 상세분석
예시) 도서관: 서비스 범위 내 주거비율이 5% 이상 증가하면 상세분석대상으로 결정
- 조치사항
 - 제안된 프로젝트가 해당 범위 내 도서관의 서비스 수요를 높일 것으로 분석시, 도서관에 공간적 여유가 있다면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공간 추가 설치 등의 조치 시행

(2) 시사점

- 시설의 영향력,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의 확대, 필요 여부 등을 판단
- 시설에 대한 최소기준 등을 설정하여 정량적인 평가 가능
- 시설의 설치·정비·변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질의 제고와 효율적인 시설 공급·관리 필요

2_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관련 자료

[부록 표 2]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세부시설과 관련법령

종류	세부시설		개별법상 세부시설	관련제도	
공공청사	국가/지자체청사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공공업무시설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공공단체의 업무에 필요한 시설		
	주한외교관 공관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문화시설	공연장			공연법	
	박물관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술관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과학관		종합/전문	과학관육성법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문화시설	문화시설	전체		문화예술진흥법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법
				영화상영관(영화상영관, 비상설상영장) 아외음악당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도서관법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집, 복지화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진흥법	
		문화보급/전수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기본법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종합시설	국악원, 전수회관		
		그밖의 문화시설	위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전시시설	전시회 개최시설(2천㎡ 이상) + 연회장/공연시설/상담회장/설명회장 + 관련부대시설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시설	회의시설 + 전시시설 + 부대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서관	공공도서관	공립/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법	
		전문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부록 표 2 계속]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세부시설과 관련법령

종류	세부시설	개별법상 세부시설	관련제도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 숙박시설, 아영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 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지방), 보육개발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재활훈련 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 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부자·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시설	입양기관, 중앙입양원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전국·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기관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의료급여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센터	중앙/지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앙/지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 지원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시설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수련 시설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부록 표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종류

분야	개수	사회기반시설 종류			기반시설 분류체계
		기반시설		미해당	
		필수시설	임의시설		
도로	4	도로·도로의 부속물, 복합환승센터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지능형교통체계)	교통
철도	3	철도, 도시철도, 철도시설			
항만	2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항	1	공항시설			
수자원	4	하천시설	다목적댐	중수도	방재
정보통신	5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공간정보체계,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유통·공급
에너지	4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집단에너지시설		
환경	6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환경기초
유통	3	물류터미널·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택시공영차고지		유통·공급 교통
문화관광	9	도시공원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과학관, 문화시설	관광지·관광단지	공간 공공문화 체육
교육	1	학교	(유치원)		
국방	1			군주거시설	미분류
주택	1			공공임대주택	미분류
보건복지	5		어린이집, 노인주거 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문화 체육
산림	2			자연휴양림, 수목원	공간
기타 (미분류)	3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공공문화 체육
		화장시설			보건위생
				산업집적기반시설	미분류

[부록 표 4]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공급가능 주체

구분	공공	공공 또는 민간	
		공공	민간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원	유원지
유통공급시설	수도, 공동구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저수지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